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0. 2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10. 15.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93. 10. 20.
- 다. 상정일자: 제19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93. 10.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영찬)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하향조정하며, 대부료의 납기연장과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대상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정비(안 제21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 및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안 제24조)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안 제25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안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은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대부료의 납기를 계약체결 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는등 납기를 연장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부료의 부담경감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동 조례중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영 제95조제2항제24호"는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

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대부료율의 하향조정과 납기연장을 주골자로 하는데 우리구에도 대상건물이 있는가?
- 답변요지(김영찬 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대상건물이 없음.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철저히 연구하여 한꺼번에 개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답변요지(김영찬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 10. 27. 유남렬위원의 1인
- 나. 수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81호, '93. 9. 23)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와 불합치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다. 수정 주요골자
-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상위법과 맞게 수정
95조제2항제24호→95조제2항제25호
(조례 제38조)

- 7.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9.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93. 10. 27.
제안자: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81호 '93. 9. 23)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와 불합치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이던 것을

제95조제2항제25호로 수정(조례 제38조)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개정 '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8조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	제출일자 : 1993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하향조정하며, 대부료의납기연장과 수의계약매각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대상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정비 (안 제21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 및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 (안 제24조)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내로 연장 (안 제25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안 제38조)

3.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1992. 3. 30. 대통령령 제13624호) 제91조, 제92조제3항, 제95조제2항
-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 : 재산13330-2670호('93. 9. 20)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예산수반 여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중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중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p> <p>② (생략)</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개정안과 같음)</p> <p>1-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3. (생략)</p> <p>가. (생략)</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마.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신 설)</p> <p>(신 설)</p> <p>4. (생략)</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은 이하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4. (현행과 같음)</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개정안과 같음)</p> <p>라. (개정안과 같음)</p> <p>마. (개정안과 같음)</p> <p>바. (개정안과 같음)</p> <p>사.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규정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에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규정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에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대부료의 납기)</p> <p>① (개정안과 같음)</p>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p>1. (생략)</p> <p>2. 경작외의 목적으로 대부분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p> <p>3. (생략)</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신설)</p>	<p>1. (현행과 같음)</p> <p>2. 경작 외의 목적으로 대부분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p> <p>3. (현행과 같음)</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p> <p>(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개정안과 같음)</p>